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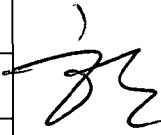






대한민국국회

문서번호	의사 제 154 호	(전화번호 788-2902)		의 장
취 급		차 장	총 장	
보 존 간	영구·준영구 10·5·3·1년			
시행일자	1999 . 3 . 22 .			
국 장		협 조		
과 장				
기 안	백 응수			
수 신 참 조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장		발신 명의	의 장
제 목	반론발언 허용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원이 해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여도 현행 국회법에는 이를 허용할 만한 발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법과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반론발언"제도를 국회법상 새로이 별첨과 같이 창설하고자 의견을 제시 하니 귀 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법률안의 심사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국회법 제104조(발언원칙) 제1항에 대한 개정의견 1부. 끝.				
				

國會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	--

發議年月日： 1999年 月 日

發議者：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행한 議員의 發言에 대하여 다른 議員이 解明을 하거나 反論을 제기하고자 하여도 現行 國會法에는 이를 허용할 만한 發言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解明이나 反論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便法으로 議事進行發言 등을 통하여 反論을 제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임.

따라서 이와 같은 便法과 不便을 해소하고 議員들의 자유로운 發言機會를 보장하기 위하여 3분 이내의 “反論發言” 制度를 國會法에 새로 규정하는 한편, 議事進行發言 時間도 現행 5分에서 3分으로 短縮하여 議事進行과 關聯한 內容에 대해서만 發言하도록 함.(案 第104條第1項)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身上發言·補充發言은 5分을, 議事進行發言 및 다른 議員의 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 · 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104條(發言原則) ①政府에 대한 質問의 議員의 發言時間은 15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長이 정한다. <u>다만, 議事進行發言, 身上發言 및 補充發言은 5分을 초과할 수 없다.</u></p> <p style="margin-top: 20px;">②~⑥ (생략)</p>	<p>第104條(發言原則) ①.....<u>다만, 身上發言 · 補充發言은 5分을, 議事進行發言 및 다른 議員의 發言에 대한 反論發言은 3分을 초과할 수 없다.</u></p> <p style="margin-top: 20px;">②~⑥ (現行과 같음)</p>